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 통계(승인번호 10137호)이다.

3.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조사는 제20회 조사이다.

4. 조사대상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우리구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 국방 및 가사 서비스업
-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 고정 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5. 조사시기

가. 조사기준시점 : 2012. 12. 31.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2012. 1. 1. ~ 12. 31.(1년간)

다. 조사시기 : 2013. 2. 13. ~ 3. 13.

6. 조사주기

연간 조사로써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7. 조사항목

- | | | |
|----------|------------|-------------|
| ① 사업체명 | ⑦ 조직형태 | ⑬ 연간매출액 |
| ② 대표자명 | ⑧ 사업체구분 | ⑭ 종사자 채용계획 |
| ③ 대표자 성별 | ⑨ 사업자 등록번호 | ⑮ 사업장 점유형태 |
| ④ 대표자 연령 | ⑩ 법인등록번호 | ⑯ 연령대별 종사자수 |
| ⑤ 소재지 | ⑪ 사업의 종류 | |
| ⑥ 창설연월 | ⑫ 종사자 수 | |

8. 조사단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 사업소도 별개의 조사 단위

9. 조사방법

임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면접조사 실시